

의안번호	2112505
의 퇴 인	고민정 의원
회 답 일	2021. 9. 10.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요약

I. 재정수반요인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안 제19조의2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에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”을 포함함(제1항)

II. 비용추계 결과

- 추가재정소요: 향후 5년 간 총 1억 300만원, 연평균 2,100만원

[표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계	연평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(안 제19조의2)	21	21	21	21	21	103	21

차 례

I. 비용추계 결과	1
II. 재정수반요인	1
III. 비용추계의 전제	1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	2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	2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안 제19조의2)	3

일러두기

-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 -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
 -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-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에 “「아동복지법」 제 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”이 포함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에 2,100만원, 2026년에 2,1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300만원(연평균 2,1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2~2026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계	연평균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(안 제19조의2)	21	21	21	21	21	103	21

II. 재정수반요인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안 제19조의2)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에 “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”을 포함함(안 제19조의2제1항)

III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에 “「아동복지법」 제 15조제1항제3호¹⁾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

1)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(보호조치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3.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·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

학년 이하의 아동”(이하 개정안의 아동)을 포함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자가 수가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개정안의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, 부 또는 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지 여부 등을 추정하기 곤란하나, 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 통계에 근거하여 개정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

IV. 비용추계 상세 내역

1. 추계의 대상 및 방법

- 비용추계 대상은 “개정안의 아동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”로 하며, 추가재정소요는 수급자 수에 월 평균 급여액과 지급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함
 - 개정안의 아동과 관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5명으로 가정함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2019년 기준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7세 이하 아동 수는 655명이며, 8~10세 아동 수는 900명임
 - 위 통계는 1세별 자료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의 아동 수를 추정하기 위해 8세 아동 수를 별도로 추정함
 - 2020년 기준으로 2013~2020년 출생아 수(누적)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비율은 0.5%이며, 위 아동 수에 동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함

<비용추계 산식>

$$\begin{aligned} \text{추가재정소요}_t &= \text{개정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}_t^{1)} \times \text{월 평균 급여액}_t^{2)} \\ &\quad \times \text{지급개월 수}_t^{3)} \\ \text{이때, } t &\text{는 추계연도(2022~2026년)} \end{aligned}$$

1) 5명. 보건복지부 자료와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통계에 근거하여 추정함.

2) 2020년 기준으로 45.5만원이며, 연평균 증가율 0.4%를 반영함.

3) 9개월. 2020년 기준으로 동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.
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안 제19조의2)

□ 개정안의 아동 관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는 연 5명으로 가정함
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2019년 기준으로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7세 이하 아동 수는 655명이며, 8~10세 아동 수는 900명임
- 위 통계는 1세별 자료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8세 아동 수를 별도로 추정함
 - － 행정안전부의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(행정구역(시군구)별/1세별 주민등록인구)에 따르면, 8~10세 아동 수 대비 8세 아동 수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34.1%²⁾이므로 8세 아동 수는 307명(=900명×34.1%)으로 추정됨
- 따라서 개정안의 아동 수는 2019년 기준으로 총 962명(=655명+307명)으로 추정됨

2) 8~10세 아동 수 대비 8세 아동 수의 비중은 2016년 33.1%, 2017년 31.7%, 2018년 34.1%, 2019년 34.1%임

[표 2]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아동 수 현황

(단위: 명)

	2016	2017	2018	2019
가정위탁 중인 아동 수	12,907	11,975	11,111	10,334
7세 이하	707	708	670	655
8세 이상 (8~10세)	12,200 (867)	11,267 (824)	10,441 (870)	9,679 (900)

자료: 보건복지부

- 2020년 기준으로 2013~2020년 출생아 수(누적) 대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 수 비율은 0.5%이며, 개정안의 아동 수에 동 비율을 곱하여 수급자 수를 추정함(5명=962명×0.5%)
 - 개정안의 아동 수가 감소 추세이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간 5명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월 평균 급여액은 2020년 기준으로 45.5만원이며, 추계기간 동안 연평균 0.4%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월 평균 급여액은 2017년 45.0만원에서 2020년 45.5만원으로 연평균 0.4% 증가함
- 급여 지원기간을 9개월(2020년 기준)로 가정할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2년에 2,100만원, 2026년에 2,100만원 등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1억 3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2~2026년

	2022	2023	2024	2025	2026	합계
수급자 수(명)	5	5	5	5	5	—
월 평균 급여액(만원)	45.8	46.0	46.1	46.3	46.5	—
지원개월 수(월)	9.0	9.0	9.0	9.0	9.0	—
재정소요(백만원)	21	21	21	21	21	10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국회예산정책처	경제비용추계과
과	장 이현경
추계세제분석관	윤주철
연 락 처	02-6788-3737
	yjc@nabo.go.kr
